■ 법인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51호서식] (2022.03.18. 개정)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연도	. . . ~ . . .	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	법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구분		① 요건	② 검토내용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
중기업	⑩1 사업요건	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	구분 / 업태별 / 기준경비율 코드 / 사업 수입금액 (01) ( )업 / (04) / (07) (02) ( )업 / (05) / (08) (03) 그 밖의 사업 / (06) / (09) 계	(17) 적합 (Y) 부적합 (N)	(26) 적 (Y) 부 (N)
	⑩2 규모요건	○ 아래 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봄)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-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	가. 매 출 액 - 당 회사(10) (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11) (억원) 이하 나. 자산총액(12) (억원)	(18) 적합 (Y) 부적합 (N)	
	⑩3 독립성요건	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⑩2의① 기준) 이내일 것	(19) 적합 (Y) 부적합 (N)	
	⑩4 유예기간	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	○ 사유발생 연도(13) (년)	(20) 적합 (Y) 부적합 (N)	
소기업	⑩5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	중소기업 업종(⑩1)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요건(⑩3)을 충족하는지 여부	(21) (Y), (N)	(27) 적 (Y) 부 (N)
	⑩6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본다) 이내일 것		○ 매 출 액 - 당 회사(14) (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15) (억원) 이하	(22) (Y), (N)	

구분	① 요 건	② 검 토 내 용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
중견기업	⑦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, 중소기업 업종(⑩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(23) (Y), (N)	(28) 적 (Y) 부 (N)
	⑧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	(24) (Y), (N)	
	⑨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[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]: 1천5백억원 미만 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 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)):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: 3천원억 미만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직전 3년 / 직전 2년 / 직전 1년 / 평균 (억원) / (억원) / (억원) / (억원)	(25) (Y), (N)	

작 성 방 법

1.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,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.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.

   - 호텔업 및 여관업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), 주점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) 등

2. ② 검토내용란의 ⑬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.

3. ② 검토내용란의 ⑭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4.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"적합" 또는 "부적합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 이 경우 (25)란은 ① 요건란 ⑨의 ① ~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"(Y)"에 "○"표시하며, ⑨의 ① ~ 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
5. ④ 적정여부의 (26)란은 ① 요건란의 ⑪・⑫・⑬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, ① 요건란의 ⑭ 요건(유예기간)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(Y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
6. ④ 적정여부의 (27)란은 ① 요건란 ⑮ 및 ⑯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(Y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
7. ④ 적정여부의 (28)란은 중소기업이 아닌[(26)에 "부(N)"로 기재]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⑦, ⑧, ⑨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(Y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봅니다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	25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	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6. 가구 제조업	C32		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	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제외)	
8. 광업	B		32. 운수 및 창고업	H	
9. 식료품 제조업	C10		33. 정보통신업	J	
10. 담배 제조업	C12		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
			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(임대업은 제외한다)	N (N76 제외)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41. 금융 및 보험업	K	
			42. 부동산업	L	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43. 임대업	N76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44. 교육 서비스업	P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	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	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		
22. 수도업	E36				
23. 건설업	F				
24. 도매 및 소매업	G				

*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.

작 성 방 법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봅니다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			19. 광업	B	
2. 음료 제조업	C11		20. 담배 제조업	C12	
			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			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29. 건설업	F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30. 운수 및 창고업	H	
			31. 금융 및 보험업	K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			33. 정보통신업	J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제외)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35. 부동산업	L	
			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			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			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15. 가구 제조업	C32		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			41. 교육 서비스업	P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17. 수도업	E36		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*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.